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이 광 성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현재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는 자연재해로 인정하여 계량기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사용자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, 대부분의 계량기 동파는 보온상태 부실 등 수도사용자들의 관리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량기 관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
동 조례안은 수도계량기가 동파나 자연재해로 파손되는 경우 수도계량기 교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그 일부를 수도사용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계량기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